

**참 고****자치법규 입법계획(방침) 수립 예시**

시 민			
주무관	00팀장	00과장	실·본부·국장
문서번호			
결재일자			제정·폐지 : 시장 또는 부시장 개정 : 부시장 또는 실 본부·국장
공개여부			
방침번호			
협 조		법무담당관 예산0팀장	법무담당관, 예산담당관(소관 팀장) 협조

---

##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

---

0000. 00.

**기 획 조 정 실**  
(법무담당관)

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\*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민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전문가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사회적 약자 배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성별분리 통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선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타 기관 협의 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 영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바른 우리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어스, 플랜, 앙구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재문서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지속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#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

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·표현을 정비하는 등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## □ 추진배경

- 조문의 체계를 실제 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다시 편제하고,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
- 현행 「입안심사기준표」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「조례」보다는 「규칙」에서 규정함이 합리적
  - ※ 「입안심사기준표」 : 자치법규의 필요성,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(현행 111개 항목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 용어·표현을 재정비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- 목적/정의 규정 명료화(안 제1조, 제2조)
  - 조례의 목적을 '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'과 '시민의 권익 증진'으로 명확히 하고(안 제1조), 정의 규정에 '법령'을 추가함(안 제2조)
- 조문의 체계(순서) 재정리(안 제4조 ~ 제11조)

현행 조례	전부개정 조례
제2장 입법 예고	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
입법 예고(제4조~제8조)	입법안 작성(제4조)
공청회(제9조)	사전 협의(제5조)
협의 등(제10조)	입법 예고(제6조~제9조)
입법안 작성(제11조)	공청회(제10조)
입법안 심사(제12조)	입법안 심사(제11조)
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(제13조)	삭제 ※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

- 조례에는 ‘입법안 작성 유의사항’을 신설하고, ‘입안심사기준표’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으로 위임 (안 제4조, 제11조)
  - ‘입안심사기준표’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실무의 기준이 되는 점검표 (체크리스트)로서 시민의 권리·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
  - 따라서, ‘입안심사기준표’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시,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‘규칙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
    - ※ 법제처의 경우에도 시행규칙(총리령)에서 ‘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’을 규정하고 있음 (‘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)
  - 다만, 조례에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하고, 입안 심사기준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
  
- 한자 병기, 상위법령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등에 따라 용어 · 표현 재정비 (안 제6조, 제4조제2항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~제17조 등)
  -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 병기 : 전문(前文), 연서(連署)
  - 「행정절차법」,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의 기술방식이나 표현에 맞춰 조문의 문구·체계 정리
  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·표현 재정비 등

## □ 추진일정

- 조례안 입법예고(20일간) : ’17. 11. 23.(목) ~ 12. 13.(수)
-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: ’17. 11. 20.(목) ~ 12. 11.(월)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’17. 12. 28.(목)
- 조례안 시의회 제출 : ’18. 1월(예정)
- 시의회 의결 및 공포 : ’18. 3월(예정)

〈붙임〉 1.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문(안) 1부. 끝.

## 참 고

##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예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0000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개정지시문 제목 : 서울특별시 0000조례(규칙) 일부개정조례(규칙)안

※ (주의) 일부개정조례(규칙)안(○), 일부△개정△조례안(X, 띄어쓰지 않음)

서울특별시 0000조례 일부(전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개정문 첫줄에 ‘0000조례 일부(전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’로 작성

제명 “서울특별시 0000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△△△△△조례”로 한다.

조례의 제목 변경 : 제명 “0000000 조례”를 “△△△△△△△ 조례”로 한다.

※ (주의) 변경할 부분에 큰따옴표(" ") 표시, 제명은 일부분이 아닌 제명 전체를 표시

제2조제1항 중 “000”를 “△△△△△”로, “□□”를 “◇◇”로 한다.

조문 중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
▶ 제0조제0항제0호 중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\*\*\*\*\*”을 “○○○○○○”로 한다.

· 각 호가 있는 조문의 본문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
▶ 제0조제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
· 한 조항이 본문+단서 또는 전단+후단으로 구성된 경우 변경하는 부분을 명시

▶ 제0조제0항 본문(단서) 중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
※ 단서 : 조문의 구조가 “0000한다. 다만, ~~으로 한다”일 때 ‘다만, ~~으로 한다’ 부분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이 없는 조문에 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을 추가

- ▶ 제O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O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△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----- (신설할 조문 기재) -----

### 〈예시〉

개정문 -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
② 시보의 게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」에 따른다.

개정 후 ⇒ 제15조(공포방법)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 
② 시보의 게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」에 따른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~~~~~~ .

조문에 (각 호가 있는 경우)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경우

○조제○항 (각 호 외의 부분에) 단서(후단)을 다음과

제 17 조 ① 누구는지 운정으로부터 차내에서 나름 각 호의 항목을 하

다만,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  
르면, 각 음식판매자는 영업행위는 개인화된다.

개인적 후속 → 개인적 ① 누구에게나 학교교육 그 예비에서 나온 가족의 해의를 청에서는 아니된다.

9.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

제11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조문의 위치를 이동할 하는 경우

- ▶ 제○조제○항을 제○항으로 한다.

〈예시〉 개정문 - 제11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현 행	개 정 후
제11조제1항	제11조제1항
제11조제2항	제11조제2항
제11조제3항	제11조제3항
제11조제4항 3~5항	제11조제4항
제11조제5항	제11조제5항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조문을 (여러 개) 삭제하는 경우

- ▶ 제○조제○항을 (제○조제○항과 제△조제△항을 각각) 삭제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1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계	18,144	4,409	300	7,964	5,321	150
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별표의 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

- ▶ 본문을 개정문의 끝에 “별표○ 중 ○○란을 다음과 같이한다”

-----(개정할 표의 내용)-----

\* 주의사항 : 개정할 내용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

〈잘못된 사례〉

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18,144	4,410	300	7,964	5,320	150

→ 개정내용이  
없으므로 삭제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는 부칙 뒤, 신·구조문대비표 앞에 붙임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에 시행일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일부터 20일 후부터 효력발생

〔별표 2〕 → 별지로 붙이는 경우에는 부칙 뒤, 신·구조문대비표 앞에 위치

#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(제○조 관리)

주관국(과)	시설명	위치	주요기능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일부개정인 경우에만  
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0000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△△△△조례</u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제목 기재 (제목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)</p> <p>제2조(~~~~) ~~~~~~  ~~~~~<u>000</u>를~~~~~  ~~~~~<u>□□</u>에~~~~  ~~~~~변경하는 부분은 밑줄 표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조(목적) -----  -----<u>△△△</u>를-----  -----<u>◇◇</u>에-----  변경이 없는 부분은 ----으로 표시</p>
<p>제3조(00)① ~~~~~~  ~~~~~. ****.*****.</p>	<p>제3조(00) -----  -----. <u>○○○○○○</u>.</p>
<p>1.~3.(생 략)  변경이 없는 조항은 조문 생략 후 개정안 현행과 같음으로 작성</p>	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*****)~~~~~  ~~~~~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현행에 없는 조문이 신설되는 경우 현행에 <u>&lt;신 설&gt;</u>로 기재</p>	<p>제4조(*****)①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.  ②~~~~~  ~~~~~  ~~~~~.</p>

제5조(@@)~~~~~. <단서 신설>

제11조(☆☆)①(생략)

②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.

③ ~ ⑤ (생략)

제12조(○○)①~~~~~

~~~~~.

②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

☆☆☆☆☆☆☆☆.

제13조(△△)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.

제5조(@@)-----  
-----. 다만, ~~  
~~~~~.

제11조(☆☆)①(현행과 같음)

⑤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
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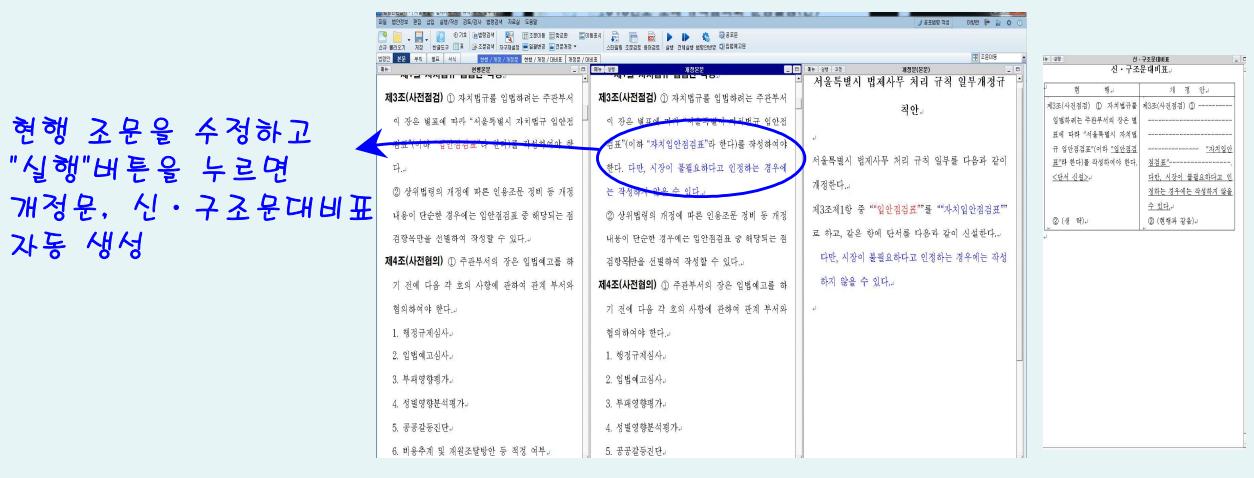
<삭 제> 해당조문 전체 삭제

<삭 제> 해당조문 전체 삭제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에는 부칙, 별표·서식의 개정사항은 작성하지 않음

#### ◀ 법제처의 '법령안 편집기'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정안 작성 ▶

- 정부입법 지원센터(<https://www.lawmaking.go.kr>)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
- 개정본문을 작성하면 개정문, 신·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



현행 조문을 수정하고  
"실행"버튼을 누르면  
개정문, 신·구조문대비표  
자동 생성